

신청인은 반박문 문안을 본질적으로 변경할 경우 현실성있는 한계내의
기간 내에 게재의무자에게 새로이 송달하여야 한다

쾰른지방법원 1989.3.22 자 판결

-28 093/89 사건-

적용법조

노르드하인-웨스트팔렌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1. 「책임편집인」이라는 개념은 「수석편집인」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2. 구두변론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변경된 반박보도청구는 현실성이 있는 한계 내의 기간 내에, 게재의무자에게 새로이 송달되어야 한다. 보도의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이 중대하게 변경된 신청이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특히 위와 같이 하여야 한다.

사실개요

피신청인 1 은 일간지인 「Express」의 발행인이고, 피신청인 2 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위 신문의 「수석편집인」이고 신청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문의 「책임편집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1988. 12. 22.자 「Express」신문에는 『Miss 독일이 동독으로부터 오다』라는 제목 하에 쾰른에서 있는 Miss 독일 선발과정을 다룬 기사가 실려져 있다. 위 기사에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져 있다. 즉 「여러명의 심사위원들이 과연 누가 <그의> Miss로서 전통적인 미인경연대회인 에 파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는 중에…」

위와 같은 기사가 공표된 것을 이유로 하여 신청인은 1989. 1. 2.자 그의 개인적인 서신을 통하여 피신청인 2 에 대하여, 그리고 1989. 1. 13.자 그의 대리인의 서신을 통하여 피신청인 1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박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 즉,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과연 누가 <그의> Miss로서 전통적인 미인경연대회인 및 에 파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은 현존하고 있는 독점계약에 의하여, 오로지 DIMA Miss Germany Company, Dieter H. Rissen, Köln 2-4, 5100 Aachen 만이, DIMA Miss Germany Company가 선발한 로서 전통적인 미인경연대회인 와 에 파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피신청인이 위 반박문의 게재를 거부하자, 신청인은 위 청구권을 법원이 실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우선 피신청인 2는 소송의 대상이 된 기사에 대한 책임편집인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들은 위 신청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위 반박문은 원문기사에 대한 하등의 반박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이유

가처분의 명령을 구하는 신청은 이유가 없다.

NW 주 언론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는 위 반박문의 게재를 구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2에 관련해서는, 이미 그의 수동적 당사자능력이 충분히 주장되었거나, 소명되지 못하고 있다. NW 주 언론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반박보도의 청구는 발행인 이외에도 「책임편집인」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책임편집인」으로서의 피신청인 2의 지위 <위 개념은 수석편집인의 개념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는 피신청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바 한편으로는 신청취지에 나타나고 있는 모순되는 진술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청이유에 나타나고 있는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서술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명되지도 아니하고 있는데, 그의 지위는 예를 들면 1988. 12.22.자 위 신문의 발행기에 의하여도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두 사람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청구는 그 본안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피신청인에 의한 반박문 보도 거절의 시점과 법원에의 반박보도청구의 시점과의 시간적 경과로 인한 청구권의 실효 여부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신청인이 예외적 청구로서 주장하고 있는, 법정 이외에서 요구한 반박문에는 「Express」신문에 게재된 원문기사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대사실의 주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즉 원문기사에는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누구를 「그의」 Miss 로서 앞서 본 미인대회에 보낼 것이냐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신청인은 그의 「반박문」에서 단지 신청인만이 독점계약을 근거로 해서 위 파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는 원문기사에 대하여 하등의 반대되는 주장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청인이 이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그들의」 후보자를 파견한 권한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는 것이 위 신청인의 권한에 하등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원문기사의 내용을 「...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용어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아무런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의 「반박문」의 위 첫번째 부분은 명백히 문제로 된 신문기사에 있어서 원문보도내용의 요약인 것이고, 원문보도에 대한 반박문의 일부로서 생각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되어서도 아니될 것이다. 이는 바로 뒤에 이어서 기재된 「반박문」(이는 「...이 진실이다」라는 용어로 시작되고 있다) 이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바에서 분명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의문이 제기되자 신청인은 이에 대한 대비로서 원래의 반박문(「심사위원들이 토론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다」)을 지금까지의 반박문에 대하여 추가로 삽입하면서 이 신청을 주 청구로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청은 위 반박문이 이제는 (원문기사의 요약의 변경이 요구하고 있는 바의) 내용적으로 보아 모두 정당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즉 반박문을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반박청구의 내용에 본질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변경청구는 NW 주 민론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박보도의 청구를 그 게재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이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송달은 행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의 소송대리인이 구두변론에서 위 의무자를 대리하여 변경된 반박보도청구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주 청구는 이미 이 점에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OLG Hamburg, AfP 1984, 155 ; 1981, 408 . OLG Köln, Urteil vom 10. Januar 1989- I5U198/88 사건 참조).